

「국군포로 기억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

의안 번호	3240
----------	------

문성호 의원 (국민의힘, 서대문2)

-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신동원·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입니다.
- 6·25전쟁이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하여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였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입니다.
-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했습니다.

-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는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날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날은 지정된 바 없습니다.

-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은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군포로 생사 확인과 송환 촉구를 위하여 분단 이후 최초의 국군포로 귀환자인 조창호 중위가 전역식을 가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